

8. 建築士法 施行規則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建設交通部公告 第1996-57號 1996. 3. 4

1. 개정이유

건축사법 개정('95. 1. 5. 법률 제4,918호)에 따른 혈행규정의 운용상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소속된 건축사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체 건축물에 대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함.

나. 도지사가 건축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다른 도지사 또는 건축사협회에 이를 통지하도록 함.

다. 건축사협회가 건축사보 관리등 수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

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.

라. 건축사가 설계도서 또는 설계수급대장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.

3. 의견제출

이 개정령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(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, 전화: 503-7324, 참조 주택도시국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